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검 토 보 고

<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579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17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18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20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2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4

1. 총괄 검토의견 ····· 4

2. 개별 법률별 검토의견 ····· 6

1)「대기환경보전법」 ····· 6

2)「물환경보전법」 ····· 10

3)「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 13

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16

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

Ⅰ. 제안경위

2024년 12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은 2024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 번호	법률안	발의자	제안일	회부일
220657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24-12-17	2024-12-18
2206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18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6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의안번호 제2206579호)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2. 물환경보전법(의안번호 제2206617호)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의안번호 제2206618호)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06620호)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06622호)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의견

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1]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법률안 주요 내용]

연번	법률 및 대상 조문	개정 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부과금이 3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2	물환경보전법(제41조)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부과금이 3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배출부과금이 3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부과금이 일정 금액(현행 행정규칙 상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1)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법제처, 2024.12.17.

개정안과 같이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법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2. 개별 법률별 검토의견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법 제35조[2]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35조의2[3]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등 특수한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대기배출부과금의 종류 및 개요]

구 분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정책목표	오염자 부담원칙	허용기준 준수 유도
정책성격	경제적 유인책으로 자발적 배출억제 유도	위반 시 벌과금 부과로 기준준수 유도
부과항목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1~3종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1~5종)

자료: 환경부

그런데 환경부훈령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4]에 따르면, 고지할 부과금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최저한도를 두고 있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5]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 감면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담금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해야 하며 모법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6]

4)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액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일 때에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87p, 법제처, 2024.

이에 개정안은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2)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9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배출부과금) ① ~ ⑧ (생략) <신 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법 제41조[7]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환경

7) 「물환경보전법」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수질오염부과금의 종류 및 개요]

구 분	기본배출부과금('97~)	초과배출부과금('83~)
정책목표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 저감·관리	▪ 배출허용기준 준수 유도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상항목	▪ 2종(유기물질, 부유물질)	▪ 19종(일반 8종, 특정 11종)
부과대상	▪ 1~5종 사업장(공동방지시설 포함)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1~5종 사업장(공동방지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포함)

자료: 환경부

그런데 환경부훈령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8)에 따르면, 고지할 부과금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8)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액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일 때에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하도록 최저한도를 두고 있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9]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 감면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담금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해야 하며 모법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10]

이에 개정안은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87p, 법제처, 2024.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 ⑪ (생 략) <신 설>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법 제36조[11]에서는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개요]

정책목표	폐기물의 순환이용 유도
정책성격	경제적 유인책으로 자발적 배출억제 유도
부과항목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분된 순환이용 가능한 폐기물
부과대상	(생활폐기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산출방식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요율*(원/kg)×산정지수 (최초 1, 그다음 해부터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 (요율) △매립 : 10원/kg ~ 30원/kg, △소각 : 10원/kg

자료: 환경부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그런데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분분담금 사무처리규정」[12]에 따르면, 산정한 부담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 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최저부과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13]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 감면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담금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해야 하며 모법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14]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분담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12) **「폐기물처분분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징수기관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87p, 법제처, 2024.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생략) <신 설>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법[15]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먼지, 질소산

1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화물 및 황산화물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일일 7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개별법에 우선하여 동 법을 적용하도록 함.

현행법 제15조[16]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는 사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16조[17]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 특수한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환경부훈령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18]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최저한도를 두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고 소액의 배출부과금 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18)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액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일 때에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개정안은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19]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 ⑪ (생 략) <신 설>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법 제19조[20]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함.

[재활용부과금 개요]

주요내용	생산자가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 부여
대상품목	-자원재활용법상 28종(포장재 4종*, 제품 24종**),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상 5개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패널 등) *(포장재)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제품) 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필름, 전지, 타이어, 윤활유, 조명, 필름류, 합성수지재질 제품 15종
부과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산출방식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 재활용단위비용) + 미이행량에 따른 가산금액(15~30%)

자료: 환경부

그런데 환경부예규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1]에 따르면, 고지할 재활용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최저부과액을 두고 있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2]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 감면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 ⑩ (생 략)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21)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재활용부과금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2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담금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해야 하며 모법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23]

이에 개정안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동 법 제12조의2[24]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해서도 최저부과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의4[25]에서는 최저부과액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23)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87p, 법제처, 2024.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